



제297회 임시회
2011.01.21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,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 하여 응시생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신설함(안 제4조제3호 단서)
-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종전 10,000원에서 무료로 함(안 별표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,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와 관계법령에 따라
 -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 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 -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되므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응시수수료(1인당 10,000원)를 무료로 함으로써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임용시험 응시자 등의 권익보호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생각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7조 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

- 제21조 (응시수수료)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6.8, 2007.10.1>
- [전문개정 1991.10.8]

□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

- 제12조 (수수료 <신설 1986.2.17>)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